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1626
결재일자	2015.2.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청번호	

★ ◎

민중의 삶은 희망의 희망. 성동

주무관	예산팀장	기획예산과장	기획재정국장	
전지영	이정희	대나재진	02/05 김종순	
협조	문화체육과장 직무대리 이현식 노인청소년과장 강종식			

- 2015년도 제1회 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

2015. 2.



성 동 구
[기획예산과]

- 2015년도 제1회 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

지방재정법 제32조 및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정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자 함.

1 추진 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~3, 제32조의 7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~제15조, 제27조

2 심의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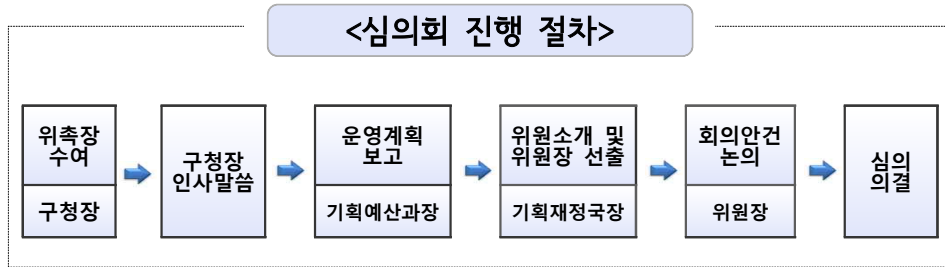
- 일 시: 2015. 2. 6.(금) 16:30
- 장 소: 8층 대회의실
- 안 건: 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타당성 심의
- 위원회 구성: 총 12명
 - 위촉직: 9명(변호사2, 세무사1, 회계사1, 교수4, 전직공무원 1)
 - 당연직: 3명(기획재정국장, 행정관리국장, 주민생활국장)
- ※ 위 원 장: 민간위원 중 호선/ 부위원장: 기획재정국장

<보조금 심의회 심의사항>

1.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2.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구의회 제출사항
3.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4.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등

3 세부 심의계획

○ 심의절차



○ 심의안건: 보조금 관련 조례안 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 - 보조금 관련조항: 조례안 제13조
(축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, 조사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원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 - 보조금 관련조항: 조례안 제6조
(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결산 등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·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
 - 보조금 관련조항: 조례안 제10조
(어린이·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 활동시설에 필요한 예산지원)

○ 심의방법: 심사표에 의거 조례의 적정성, 주민복지 증진, 사업계획, 보조금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

4 소요 예산

○ 위원회 수당: 총 630천 원

- 산출내역: 70,000원 X 9명 = 630천 원
- 예산과목: 기획예산과, 기획, 창의행정 역량 강화 및 건전한 재정운영, 재정 및 예산분석 운영, 지방보조금 관리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5 행정 사항

○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----- 문화체육과, 노인청소년과

- 붙임 1. 2015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.
2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 1부. 끝.